

광명시 공고 제2024-392호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 이유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을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추가하여 체육 인재 육성 지원에 기여하고, 광명건강체육센터(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개관 예정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의 체육활동’ 추가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사용시간) 제6항 ‘광명건강체육센터 사

용시간’ 신설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조문 및 [별표1] 개정, [별표7] 신설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단서 조항 추가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4. 2. 19.(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체육진흥과장)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03(우 14259)
- 문의처 : 체육진흥과 ☎ 02-2680-6360

의견제출서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핸드폰) :
- 자치법규명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을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자가 우선순위에 추가하여 체육 인재 육성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광명건강체육센터(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개관 예정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 사용자가 우선순위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의 체육활동’ 추가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사용시간) 제6항 ‘광명건강체육센터 사용시간’ 신설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조문 및 [별표1] 개정, [별표7] 신설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단서 조항 추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 예산법무과, 기업지원과, 여성가족과, 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2024.1월 원안 가결
 - (2) 입법예고 : 2024. 1. 30. ~ 2. 19.(20일간)
 - (3) 성별영향평가 실시 : 2024. 2월 중
 - (4) 부패영향평가 실시 : 2024. 2월 중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의 체육활동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광명건강체육센터

구 분	평 일	주말(토)
사용시간	오전 6시 ~ 오후 9시	오전 9시 ~ 오후 6시

제10조제2항 중 “별표6”을 “별표7”로 하며 “별표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표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체육센터”를 “국민체육센터, 광명건강체육센터”로 , “체육센터(다목적구장)”를 “체육센터(다목적구장), 광명건강체육센터(체육관)”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의 감면 사항은 별표7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체 육 진 흥 과
입 안 자	과 장	강 원 식
	팀 장	체 육 시설 팀 장 이 민 호
	담 당 자 성 명·전화	이 승 찬 (02-2680-6360)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및 감면사항

구 분		기 준	이용료(원)	비 고
월 회 원	성 인	1명, 1월	75,000	특별 프로그램 별도
	중고생	1명, 1월	65,000	
	어린이	1명, 1월	60,000	
일일 이용	성 인	1명, 1일	4,000	
	중고생	1명, 1일	3,500	
	어린이	1명, 1일	3,000	
감면사항				
구 분		할인율	비고	
경로우대	만 65세 이상	50%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50%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본인 및 배우자)	5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심한장애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다자녀 가정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50%		
* 일일입장권(자유수영)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 *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				

- 상기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이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3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이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해당 시설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부속시설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에 관해서는 복지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를 하되, 동일 호 내에서 경합 시 광명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						
1. ~ 6. (생 략) <u><신 설></u>	1. ~ 6. (현행과 같음)						
7.·8. (생 략)	7.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의 <u>체육활동</u>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시간) ① ----- ----- ----- ----- ----- -----						
1. ~ 5. (생 략) <u><신 설></u>	1. ~ 5. (현행과 같음) 6. <u>광명건강체육센터</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35%;">평 일</th> <th style="width: 50%;">주말(토)</th> </tr> </thead> <tbody> <tr> <td>사용시간</td> <td>오전 6시 ~ 오후 9시</td> <td>오전 9시 ~ 오후 6시</td> </tr> </tbody> </table>	구 분	평 일	주말(토)	사용시간	오전 6시 ~ 오후 9시	오전 9시 ~ 오후 6시
구 분	평 일	주말(토)					
사용시간	오전 6시 ~ 오후 9시	오전 9시 ~ 오후 6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10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시장이 부과·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물가 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	② ----- ----- -----						

현 행	개 정 안																																																																																														
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1부터 <u>별표6</u> 까지로 정한다.	----- ----- <u>별표7</u>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 ----- ----- ----- ----- ----- <u>다만,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의 감면 사항은 별표7과 같다.</u>																																																																																														
1. ~ 4. (생 략) [별표 1]	1. ~ 4. (현행과 같음) [별표 1]																																																																																														
<u>시설전용사용료</u> (단위 : 원)	<u>시설전용사용료</u> (단위 :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장 소</th> <th rowspan="2">시설 별</th> <th rowspan="2">사용구분</th> <th rowspan="2">단 위</th> <th colspan="2">사 용 료</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평 일</th> <th>토·공휴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2">광 명 시 민 체 육 관</td> <td rowspan="2">주경기장 (잔디광장)</td> <td rowspan="2">체육 이외 행사</td> <td>관 내</td> <td>15,000</td> <td>202,800</td> <td rowspan="12">*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른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 내 시설물을 이용한 단체 행사는 주경기장을 전용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의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 관의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른아트홀 조명·</td> </tr> <tr> <td>관 외</td> <td>234,000</td> <td>304,200</td> </tr> <tr> <td rowspan="4">광명시민체육관</td> <td rowspan="4">체육 경기</td> <td>주간</td> <td>52,000</td> <td>67,600</td> </tr> <tr> <td>야간</td> <td>67,600</td> <td>87,800</td> </tr> <tr> <td>관 외</td> <td>78,000</td> <td>101,400</td> </tr> <tr> <td>주간</td> <td>20,000</td> <td>270,400</td> </tr> <tr> <td rowspan="4">인공암벽장</td> <td rowspan="4">체육 경기</td> <td>주간</td> <td>52,000</td> <td>67,600</td> </tr> <tr> <td>주간</td> <td>100,000</td> <td>130,000</td> </tr> <tr> <td>야간</td> <td>130,000</td> <td>169,000</td> </tr> <tr> <td>관</td> <td>150,000</td> <td>195,000</td> </tr> </tbody> </table>	장 소	시설 별	사용구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광 명 시 민 체 육 관	주경기장 (잔디광장)	체육 이외 행사	관 내	15,000	202,800	*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른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 내 시설물을 이용한 단체 행사는 주경기장을 전용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의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 관의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른아트홀 조명·	관 외	234,000	304,200	광명시민체육관	체육 경기	주간	52,000	67,600	야간	67,600	87,800	관 외	78,000	101,400	주간	20,000	270,400	인공암벽장	체육 경기	주간	52,000	67,600	주간	100,000	130,000	야간	130,000	169,000	관	150,000	195,0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장 소</th> <th rowspan="2">시설 별</th> <th rowspan="2">사용구분</th> <th rowspan="2">단 위</th> <th colspan="2">사 용 료</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평 일</th> <th>토·공휴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2">광 명 시 민 체 육 관</td> <td rowspan="2">주경기장 (잔디광장)</td> <td rowspan="2">체육 이외 행사</td> <td>관 내</td> <td>15,000</td> <td>202,800</td> <td rowspan="12">*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른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 내 시설물을 이용한 단체 행사는 주경기장을 전용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의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 관의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른아트홀 조명·</td> </tr> <tr> <td>관 외</td> <td>234,000</td> <td>304,200</td> </tr> <tr> <td rowspan="4">광명시민체육관</td> <td rowspan="4">체육 경기</td> <td>주간</td> <td>52,000</td> <td>67,600</td> </tr> <tr> <td>야간</td> <td>67,600</td> <td>87,800</td> </tr> <tr> <td>관 외</td> <td>78,000</td> <td>101,400</td> </tr> <tr> <td>주간</td> <td>20,000</td> <td>270,400</td> </tr> <tr> <td rowspan="4">인공암벽장</td> <td rowspan="4">체육 경기</td> <td>주간</td> <td>52,000</td> <td>67,600</td> </tr> <tr> <td>주간</td> <td>100,000</td> <td>130,000</td> </tr> <tr> <td>야간</td> <td>130,000</td> <td>169,000</td> </tr> <tr> <td>관</td> <td>150,000</td> <td>195,000</td> </tr> </tbody> </table>	장 소	시설 별	사용구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광 명 시 민 체 육 관	주경기장 (잔디광장)	체육 이외 행사	관 내	15,000	202,800	*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른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 내 시설물을 이용한 단체 행사는 주경기장을 전용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의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 관의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른아트홀 조명·	관 외	234,000	304,200	광명시민체육관	체육 경기	주간	52,000	67,600	야간	67,600	87,800	관 외	78,000	101,400	주간	20,000	270,400	인공암벽장	체육 경기	주간	52,000	67,600	주간	100,000	130,000	야간	130,000	169,000	관	150,000	195,000
장 소					시설 별	사용구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광 명 시 민 체 육 관	주경기장 (잔디광장)	체육 이외 행사	관 내	15,000	202,800	*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른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 내 시설물을 이용한 단체 행사는 주경기장을 전용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의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 관의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른아트홀 조명·																																																																																									
			관 외	234,000	304,200																																																																																										
	광명시민체육관	체육 경기	주간	52,000	67,600																																																																																										
			야간	67,600	87,800																																																																																										
			관 외	78,000	101,400																																																																																										
			주간	20,000	270,400																																																																																										
	인공암벽장	체육 경기	주간	52,000	67,600																																																																																										
			주간	100,000	130,000																																																																																										
			야간	130,000	169,000																																																																																										
			관	150,000	195,000																																																																																										
	장 소	시설 별	사용구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광 명 시 민 체 육 관	주경기장 (잔디광장)	체육 이외 행사	관 내	15,000	202,800	*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른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 내 시설물을 이용한 단체 행사는 주경기장을 전용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의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 관의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른아트홀 조명·																																																																																									
			관 외	234,000	304,200																																																																																										
	광명시민체육관	체육 경기	주간	52,000	67,600																																																																																										
			야간	67,600	87,800																																																																																										
			관 외	78,000	101,400																																																																																										
			주간	20,000	270,400																																																																																										
	인공암벽장	체육 경기	주간	52,000	67,600																																																																																										
			주간	100,000	130,000																																																																																										
			야간	130,000	169,000																																																																																										
			관	150,000	195,000																																																																																										

현행				개정안					
국민체육센터 (다목적구장)	체육경기	주간	26,000	33,800	체육경기	주간	26,000	33,800	
		야간	33,800	43,900		야간	33,800	43,900	
		관외	39,000	50,700		관외	39,000	50,700	
체육이외행사	체육이외행사	주간	104,000	135,200	체육이외행사	주간	104,000	135,200	
		야간	135,200	175,700		야간	135,200	175,700	
		관외	156,000	202,800		관외	156,000	202,800	
읍향장비 별도 - 읍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읍향장비 별도 - 읍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배수지체육시설, 구름산립테니스장, 족구장	족구장, 다목적구장	주간	5,000	10,000	족구장, 다목적구장	주간	5,000	10,000	
		야간	10,000	20,000		야간	10,000	20,000	
	국공장	주간	10,000	20,000	국공장	주간	10,000	20,000	
		야간	20,000	30,000		야간	20,000	30,000	
	테니스장	주간	10,000	20,000	테니스장	주간	10,000	20,000	
		야간	20,000	30,000		야간	20,000	30,000	
시운동장	인조잔디구장	관내	40,000	60,000	인조잔디구장	관내	40,000	60,000	
		관외	60,000	90,000		관외	60,000	90,000	
	축구경기이외의행사	관내	80,000	120,000	축구경기이외의행사	관내	80,000	120,000	
		관외	120,000	180,000		관외	120,000	180,000	
	다목적운동장	관내	40,000	60,000	다목적운동장	관내	40,000	60,000	
		관외	60,000	90,000		관외	60,000	90,000	
다목적운동장	관내	80,000	120,000	다목적운동장	관내	80,000	120,000		
	관외	120,000	180,000		관외	120,000	180,000		
소하배수펌프장	광명야구장	관내	40,000	60,000	소하배수	광명야구장	관내	40,000	60,000

현행				개정안					
기	관외	60,000	90,000	수 있다.	구경기	관외	60,000	90,000	
		80,000	120,000			관외	80,000	120,000	
	야구경기이외의행사	관외	120,000		180,000	야구경기이외의행사	관외	120,000	180,000
		관외	120,000		180,000		관외	120,000	180,000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별표 7]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및 감면사항									
월회원	성인	1명, 1월	75,000	특별 프로그램 별도	성인	1명, 1월	4,000		
		중고생	1명, 1월			65,000	중고생	1명, 1월	3,500
		어린이	1명, 1월			60,000		어린이	1명, 1월
	어린이	1명, 1월	3,000						
※ 감면사항									
구분		할인율	비고						
경로우대	만 65세 이상	50%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50%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본인 및 배우자)	5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심한장애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다자녀가정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50%							
* 일일입장권(자유수영)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									
*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									
① 상기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이									

관 계 법 령 발 취 서

현 행	개 정 안
	<p>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3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이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p> <p>③ 해당 시설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부속시설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에 관해서는 복지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한다.</p>

관계법령	내 용
지방 자치법	<p>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관계법령	내 용
스포츠클럽 법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관계법령	내 용
광명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시설”이란 광명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속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에는 그에 부속된 각종 시설, 설비 또는 비품 등이 포함 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호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p>제10조(사용료 등)</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시설전용사용료, 연습이용료, 방송사용료, 선전·광고 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골프연습장 이용료 등으로 구분하되, 그 요금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근거

경 제문화국 체육진흥과장 강원식